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세무사랑Pro&케이랩엔 프로그램 변경 사항



2021. 12. 28.
뉴젠솔루션
연구설계본부



목 차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부분

02. 프로그램 변경 화면

-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월세/주택임차
- 기부금 탭
- 연금저축등 I-ISA 만기시 연금계좌납입액 추가

03.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 작업순서

04. 기타

업데이트 일정

- 편리한연말정산 : 2022. 01. 05. 이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2021년 급여자료 엑셀 내려서 홈택스에 올리는 작업)

- PDF 업로드 : 2022년 01월 19일 쯤

- 이번에 추가된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서비스는 지원예정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일괄제공 신청된 수임업체별 PDF를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각 회사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DF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input type="checkbox"/> (좌동)
	<input type="checkbox"/>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국적동포로서, ii)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프로그램 조건

메뉴 : 사원등록

외국인, 거주자, 단일세율적용(부)인 근로자 일 때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5~3억원	38	1.5~3억원	38
3~5억원	40	3~5억원	40
5억 원 초과	42	5~10억원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프로그램 조건

메뉴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48.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에 의해 자동 계산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월급여	간이세액표
~ 4,500만원 초과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X42%)	~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X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8,700만원 초과 금액X45%)
○ 자녀세액공제 기준 _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_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적용시기>2021. 2. 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프로그램 조건

메뉴 : 사원등록,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_ 부양가족 입력에서 나이 자동체크
- _ 48.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 자동 계산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 . 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 원 ~1.2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p>_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등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2.12.31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④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총급여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 ~1.2억 원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p>□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p> <p>-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10% (*①~④ 금액의 합계액)</p> <p>_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2.12.31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④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총급여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 ~1.2억 원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프로그램 조건

메뉴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소비증가분]

2020년 : 직접 입력 또는 PDF로 업로드

2021년 : 각 필드에서 입력시 자동 Sum 또는 수정 가능

(참고) 2021년 소비증가분란을 수정하여 입력한 경우,

각 카드란 금액을 새로 수정, 입력하면 소비증가분란은 다시 자동Sum 으로 금액 변경됩니다.

[신용카드구분별 입력순서]

간혹 입력순서를 PDF순서대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공제한도계산, 서식 순서 등을 따르고자
입력순서는 서식과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종 전	개 정
<p>□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p>□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좌 동)

● 프로그램 조건

메뉴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 근로소득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 월세액 탭 화면에 무주택자 여부표시 추가

기본값 [부] 이므로 월세세액공제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직접 [여] 체크

0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프로그램 반영 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8항 신설)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 (21.1.1~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0%	1천만 원 초과분	35%

<적용시기> 2021.1.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기부금 발생연도별 공제율]

21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
19년 이후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8년~16년 이월기부금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15년~14년 이월기부금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

02. 프로그램 변경 화면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부양가족탭에서 기본공제대상자별 자료구분 입력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별도 탭으로 구성

계속 중도 전체 편리한연말정산 엑셀 참고: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소속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입력					
연말정산	성명	내/외국인	주민(외국인)번호	나이	기본공제	세대주 구분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0	65세이상	내	1 541001-1012345	67	본인	세대주							
합 계 [명]										1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건강	고용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	일반	실손	난임	65세, 장애인, 건강	일반	장애인특수			
국세청													
기타	191,250	36,000											
자료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등							
국세청	화면 카드 순서 변경(서식과 일치)												
기타													
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건강	고용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	일반	실손	난임	65세, 장애인, 건강	일반	장애인특수			
국세청													
기타	191,250	36,000											
자료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등							
국세청	화면 카드 순서 변경(서식과 일치)												
기타													
총급여액	275,259,378												
비과세 총액	6,861,000												
지급명세작성대상 비과세	5,301,000												
결정세액	부양가족 전체 합계												
기납부세액(현)	13,300,370												
기납부세액(종전)													
납부세액	14,043,040												
연말(계속근무자)	5												
중도(퇴사자)													
의료비 최소금액(총급여의 3%)					135,000		신용카드 등 최소금액(총급여의 25%)					1,125,000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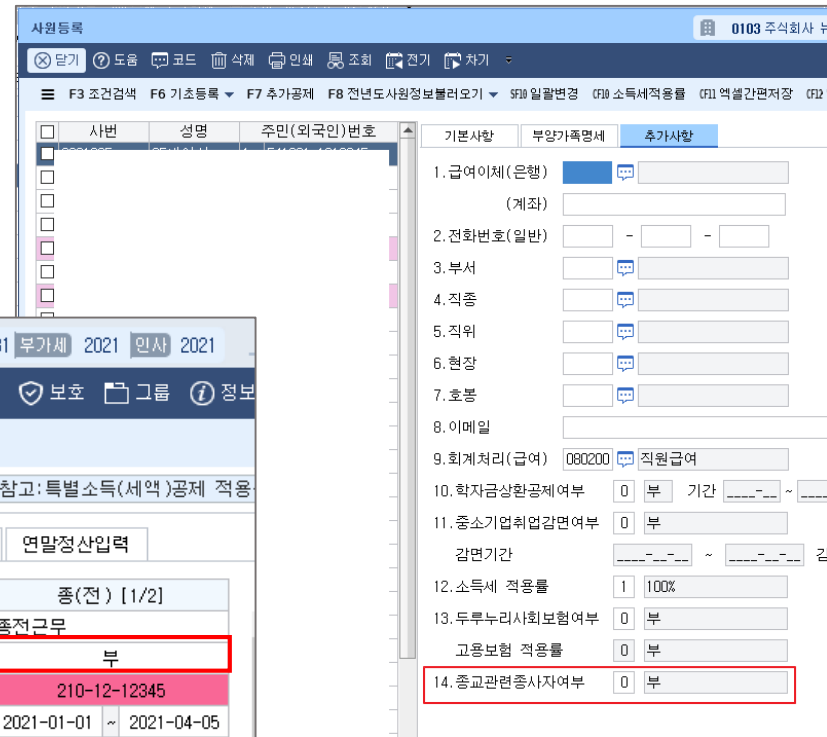
[공통] 노란색 필드 마우스 더블클릭하면 해당 내용 입력 팝업 또는 해당 입력 화면으로 이동

02. 프로그램 변경 화면

● 소득명세 탭 - 종교관련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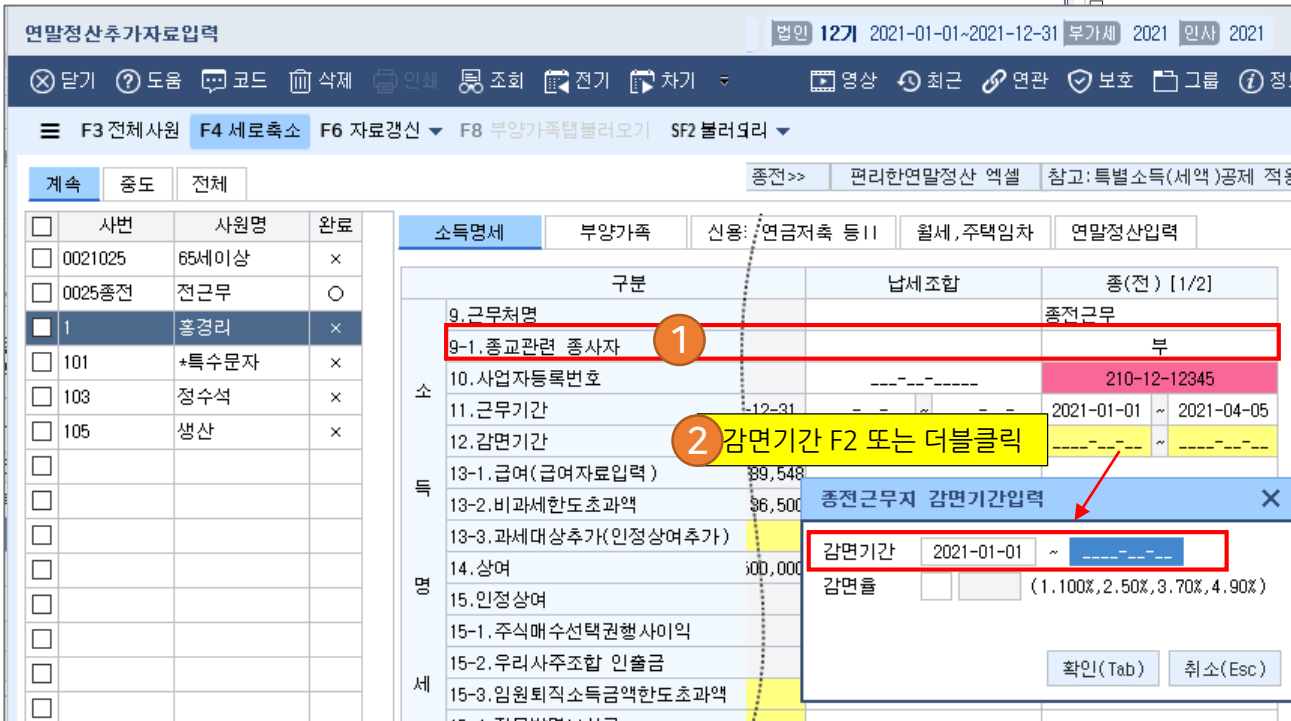
전자신고에 **종(전)근무지 종교관련 종사자** 란이 추가되어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근무지의 종교관련 종사자란은
사원등록메뉴 [추가사항]탭 14.종교관련종사자여부 에서 입력합니다.



[사원등록화면]

- ① 종전 종교관련 여부 직접 입력
- ② 감면기간은 종전 근무기간내에만 입력 가능



[연말_소득명세탭]

02. 프로그램 변경 화면

● 월세/주택임차 [인쇄서식 및 전자신고 수록 값 추가]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입력
------	------	--------	-----	-----	----------	-----------	-----------------	--------

1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크게보기

임대인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개시일	종료일			

2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크게보기

대주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원금	이자	계	

2) 임대차 계약내용 크게보기

임대인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개시일		종료일	

무주택자 해당 여부 여, 부

참고-세액공제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연 750만원

월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 세액공제한도 : 90만원

월세 세액공제 및
거주자간 차입원리금명세란
입력칸을 줄였음

무주택자 해당여부 입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여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참고사항(도움말)

02. 프로그램 변경 화면

● [연금저축 등 I] 탭 - [ISA 만기시 연금계좌납입액] 추가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I	연금저축 등 II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입력
1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연말정산입력 탭의 57.과학기술인공제, 58.근로자퇴직연금)								크게보기
퇴직연금 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연말정산입력 탭의 38.개인연금저축, 59.연금저축)								크게보기
연금저축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대상금액	소득/세액공제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연말정산입력 탭의 59-1. ISA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크게보기
연금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공제대상금액	소득/세액공제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4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입력 탭의 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크게보기
저축구분	코드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입력탭의
금액 반영 항목 표시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입력란 추가

03. 기부금 명세서 (세액공제) 작업순서

● 기부금 명세서 작업 순서

세액 감면.공제 적용순서에 의해

기부금은 맨 나중에 공제세액계산을 하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공제세액계산을 적용 했더라도 기부금 지출액 또는 다른 세액공제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공제세액계산을 실행!

[세액 감면 . 공제 적용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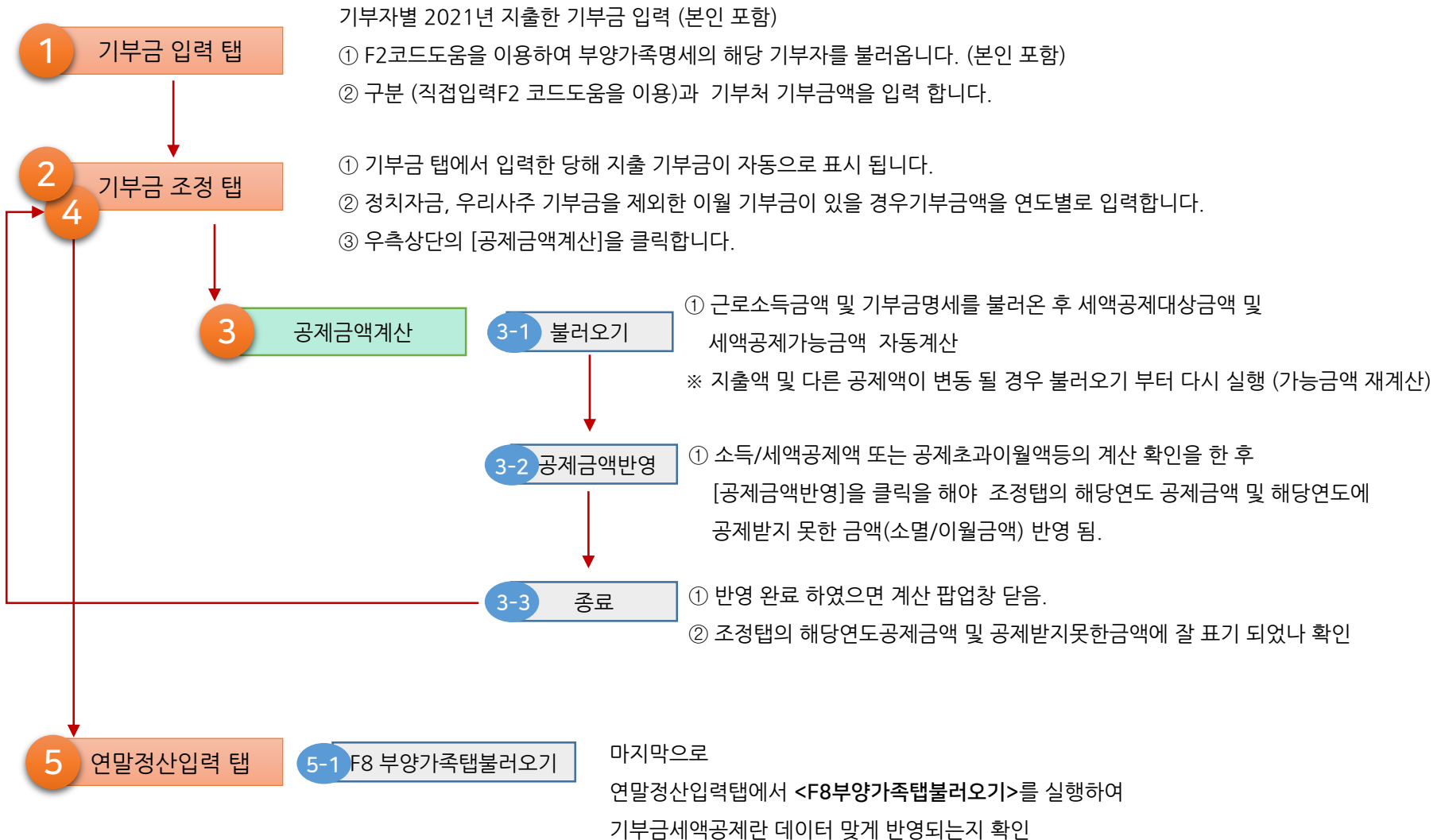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메뉴 입력시 주의 사항]

1.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인 경우 공란 가능)
2. 기부처의 상호 필수입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인 경우 공란 가능)
3. 건수 : 연간 기부 건수 기재 (입력 안된 경우 무조건 1로 수록합니다.)

03. 기부금 명세서 (세액공제) 작업순서

● 기부금 명세서 작업 순서



03. 기부금 명세서 (세액공제) 작업순서

● 기부금 명세서 작업 순서

공제금액계산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 참조							
근로소득금액	107,361,298	정치자금기부금 외 세액공제대상금액	5,000,000	세액공제가능액	15,780,929		
코드	구분	지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1 (15%, 20%)	공제율2 (25%, 30%, 35%)	소득/세액공제액	공제초과이월액
20	정치자금(10만원 이하)						
20	정치자금(10만원 초과)						
10	법정이월(2013년)						
10	법정이월(2014년)						
10	법정이월(2015년)						
10	법정이월(2016년)						
10	법정이월(2017년)						
10	법정이월(2018년)						
10	법정이월(2019년)						
10	법정이월(2020년)						
10	법정당해기부금	5,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0	종교단체 외이월(2013년이전)						
41	종교단체 이월(2013년이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4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5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6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7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8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19년)						
40	종교단체 외이월(2020년)						
	합계	5,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	
기부금(이월액)소득공제		정치기부금10만원 초과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1,000,000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종교외)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종교) 세액공제			

2021년 지출액만 해당

공제율1 → 20% 추가
공제율2 → 35% 추가

(기부금 발생연도별 공제율 참고)

→ 합계란 추가

▶ 기부금명세서 작성시 주의 사항

- ① 기부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명세서에서 해당년도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②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연도공제금액, 이월(소멸)금액은 판단하여 입력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기부금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블러오기 공제금액반영 전체삭제 저장 종료(Esc)

04. 기타

<고객들로부터 자주 문의오는 내용>

보험료등 지출액이 있는데 소득공제부분에 금액이 안 나옵니다. → 특별(소득)세액공제 반영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제표시를 해 줍니다.

합계	26.유양가족	명)		
	27.경로우대	명)		
	28.장애인	명)		
	29.부녀자			
	30.한부모가족			
	31.국민연금보험료			
	32.공무원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공보험	사립학교교직원		
	공제	별정우체국연금		
특별공제	33.보험료		227,250	?
	건강보험료		191,250	
	고용보험료		36,000	
	34.주택차입금	대출기관	1,000,000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3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			
공제	35.기부금-2013년이전이월분			
	36.특별소득공제 계			
37.차감소득금액				
그	38.개인연금저축			
	39.소기업,소상	2015년이전가입		
	공인 공제부금	2016년이후가입		
구분		소득세		
72.결정세액				
기납부	73.종(전)근무지			
세액	74.주(현)근무지			277,840

구분	특별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33)보험료	227,250	
	(34)주택자금	400,000	
	(35)기부금(이월분)		
	(36)계	627,250	
(37)차감소득금액			
(48)종합소득과세표준			
(49)산출세액			
특별세액공제	(60)보장성보험료		
	(61)의료비		
	(62)교육비		
	(63)기부금		
공제	(64)계		
	(65)표준세액공제		130,000
(69)월세세액공제			
(71)결정세액			

※특별소득(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금액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

①, 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액을 적용후 결정세액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 후 결정세액(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확인(Esc)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4 ④항)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NewZen 뉴젠솔루션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newzensolution